

감리지적 사례 FSS/1912-10 :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쟁점분야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 관련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 2019년
- 회계결산일 : 20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W사는 피혁원단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모회사인 W사는 원피 및 약품을 자회사에 공급하고, 자회사는 이를 가공하여 피혁원단을 생산 후 가죽제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경쟁심화, 주요 매출처에 대한 납품계약 단절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W사의 자회사는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X7말 완전자기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였다. 이에 회사는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종속회사 매출채권이라는 이유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W사는 X7년말 별도재무제표에서 완전자본잠식상태인 종속회사가 계속 당기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며, 동 사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 전액 회수가 어려움에도, X7년 결산 시 종속회사라는 이유 등으로 이에 대한 손상여부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아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문단 58에 따르면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한다. 또한, 문단 59에 따르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등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를 포함한다.

②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W사의 자회사가 최근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으며 X7말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한 점, 전체 매출채권 중 25% 가량이 만기가 1년이상 경과된 점을 근거로 자회사 매출채권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종속회사를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아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점과 W사가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한다. 또한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하여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회사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전액 관계사에 대한 매출채권이어서 추가적인 검토를 생략하는 등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인식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종속회사를 별개의 법적 실체로 보아야 하므로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회수가능성을 별도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